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43,850,000	34,315,500
일반회계	957,200,000	28,716,000
특별회계	186,650,000	5,599,500
공기업특별회계	114,320,000	3,429,6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1,600,000	1,848,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52,720,000	1,581,600
기타특별회계	72,330,000	2,169,900
주택사업특별회계	670,000	20,1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050,000	511,5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90,000	41,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730,000	171,900
치수사업특별회계	2,580,000	77,4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60,000	40,800
청소사업특별회계	40,980,000	1,229,4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200,000	66,000
수질개선특별회계	370,000	11,1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01,35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 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